

『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5월 17일

나. 발 의 자 : 김태근, 김성현, 김재상, 김정곤, 김정미,
박교상, 박주연, 윤종호, 이수태, 임춘구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5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5월 21일

제1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 태 근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시행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한시적인 조례로서, 시행기간이 1999.12.31자로 만료되어 존치 이유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」를 폐지함.

라. 참고사항

- 「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- 본 조례는 「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서, '95.01.01자로 제정하였으며,
- 구미시의 행정구역안에 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 시설, 건축물 및 그 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·처분에 적용토록 제정된 조례로서, 그 사업이(진평지구) 종료되었고, '99.12.31일까지 기한을 정하여 시행토록 한 한시조레이므로,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